

제322회 정례회
2013. 7. 3(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외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3년 6월 19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25일

3. 제안이유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

나.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
(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12. 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입법예고('13. 5. 30. ~ 6. 18.)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음.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